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972
----------	-----

제출년월일 : 201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사유

- 가. 신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복지수요 폭주에 따라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개편하면서 업무를 조정하고,
- 나.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방식 일부변경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재생국의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면서 업무를 조정하며,
- 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폐합 승인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을 폐지하고 인천대학교의 캠퍼스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 라. 서부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서부여성회관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실·국·본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나. 자치행정국에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8조)
- 나. 보건사회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다. 가정복지국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의2)
- 라. 도시재생국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마. 도시계획국에 도시재생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14조)
- 바. 인천전문대학 폐지에 관한 사항[안 제6절(안 제30조부터 안 제32조까지)]
- 사. 서부여성회관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6절(안 제84조, 안 제85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10쪽)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으로, “도시재생국,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교육 및 특수지역 지원”을 “녹색성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8조제1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 같은 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건사회국) 보건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및 자립기반에 관한 사항
3. 보건, 건강, 의·약무, 의료보험, 질병, 저출산에 관한 사항
4. 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보육복지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재생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군·구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대학교의 송도캠퍼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두고, 제물포캠퍼스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에 둔다.

제3장의 제6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장에 제26절(제84조 및 제8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절 서부여성회관

제84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회교육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이 절에서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 둔다.

제85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
2. 여성 문화·교양·생활체육교육 운영
3.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
4. 여성·아동에 관한 상담
5.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 교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인천대학교 소속의 교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천전문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조교는 2011년 2월 28일까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의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자격에 따라 인천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인천대학교의 조교로 임용한다. 다만, 임용되기 전까지는 인천대학교의 조교로 보되, 조교의 자격·보수 등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의 조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인천전문대학운영조례는 폐지한다.

②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회계과장”을 “회계계약심사과장”으로, “가정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환경녹지국장 및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계획국장 및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기획담당관실란의 수임기관 중 “인천대학교 총장, 인천전문대학장”을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하고, 총무과란의 수임기관 중 “인천대학교 총장, 인천전문대학장”을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을 “인천대학교”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정책기획관”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시립인천대학교의 총장·학장·처장, 시립인천전문대학의 학장·처장”을 “인천대학교의 총장·학장·처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시립인천대학교 및 시립인천전문대학”을 “인천대학교”로 “각각 대학총장 및 학장”을 “인천대학교 총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장애극복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및 제42조제2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각각 “가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가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 도시재생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 도시재생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단서 중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은”을 “인천대학교는”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나목 중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을 “인천대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실·국 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u>여성복지보건국</u>, 경제통상국, <u>도시재생국</u>, <u>건설교통국</u>, 문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u>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u>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p>	<p>제6조(실·국 본부의 설치) ----- ----- ----- <u>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u> ----- <u>건설교통국</u> ----- ----- -----</p>
<p>제7조(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조직관리, 의회협력, <u>교육 및 특수 지역 지원</u> 등에 관한 사항</li> <li>3. ~ 9. (생략)</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제7조(기획관리실)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u>녹색성장</u> -----</li> <li>3. ~ 9. (현행과 같음)</li> <li>10. <u>교육지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u></li> </ol>
<p>제8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3. (생략)</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신설&gt;</p> <p>14. <u>기타 다른 실·국·본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p>	<p>제8조(자치행정국)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13. (현행과 같음)</li> <li>14. <u>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15. <u>그 밖에 다른 실·국·본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li> </ol>
<p><u>제9조 (여성복지보건국) 여성복지보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아동복지 및 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u></li> <li>2. <u>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li> <li>3. <u>여성권익신장 및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u></li> <li>4. <u>여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u></li> <li>5. <u>보건, 위생, 의무, 약무, 방역,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u></li> <li>6. <u>청소년건강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u></li> <li>7. <u>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u></li> </ol>	<p>제9조 (보건사회국) 보건사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2. <u>장애인복지 및 자립기반에 관한 사항</u></li> <li>3. <u>보건, 건강, 의·약무, 의료보험, 질병, 저출산에 관한 사항</u></li> <li>4. <u>위생, 식품안전, 공중위생, 위해식품에 관한 사항</u></li> </ol>



현행	개정안
<p>제11조 (도시재생국) 도시재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재생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3.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4. 군·구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5.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사항</li> </ol> <p>제14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 (생략)</li> </ol> <p>제27조(설치) ① (생략) ② 대학교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에 둔다.</p>	<p><u>&lt;신설&gt;</u> 제9조의2(가정복지국) 가정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보육복지 및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사항</li> <li>2. 아동복지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항</li> <li>3.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li> </ol> <p><u>&lt;삭제&gt;</u></p> <p>제14조(도시계획국)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6 (현행과 같음)</li> <li>7. 도시재생사업의 종합기획·조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8.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li> <li>9.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10. 군·구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1.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사항</li> </ol> <p>제27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교의 송도캠퍼스는 연수구 송도동에 두고, 제물포캠퍼스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에 둔다.</p>

현행	개정안
<p>제6절 인천전문대학</p> <p>제30조(설치) ① 법 제1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천전문대학(이하 이절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대학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에 둔다.</p> <p>제31조(학장) 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p> <p>제32조(운영조례등) ①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② 대학의 관리기구 및 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대학에 설치하는 학부, 학과, 학생정원 및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lt;삭제&gt;</p>
<p>&lt;신설&gt;</p>	<p>제26절 서부여성회관</p> <p>제84조(설치) ①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에 필요한 사회교육 운영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의 중심 공간 역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이하 이절에서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서부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에 둔다.</p> <p>제85조(업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li> <li>2. 여성 문화·교양·생활체육교육 운영</li> <li>3. 여성의 창업활동 지원</li> <li>4. 여성·아동에 관한 상담</li> <li>5. 시설물 관리와 대관사업</li> <li>6. 그 밖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li> </ol>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li> <li>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li> <li>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li> <li>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li> <li>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li> <li>6. 사무의 위탁가능성</li> </ol>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